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53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임호선 · 임미애 · 박지원
이재정 · 장종태 · 안도걸
이상식 · 이정문 · 정춘생
강준현 · 김승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19조제1항·제10항 및 제59조제3항).

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의 경우 인적·장소 기준을 모두 명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마. 임시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4항).

바.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함
(안 제59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 또는 그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지”를 “청구하지”로, “검사 및 임시조치”를 “임시조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사에게”를 “법원에”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를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을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를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2개월”을 “3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사, 피해아동등”을 “관할경찰서의 장, 검사,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⑩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1조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22조제2항 중 “검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u>검사</u> 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u>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u> <u>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u> <u>라 법원에</u> 제19조제1항 각 호 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 치의 <u>청구 또는 그 신청을</u> 요 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 시조치를 <u>신청하지</u> 아니하는 경우에는 <u>검사 및 임시조치</u> 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u>검사</u> <u>또는 사법경찰관은</u> ----- ----- ----- <u>법원</u> ----- ----- -----. ② ----- ----- ----- ----- ----- ----- <u>청구를</u> ----- -----. ③ ----- ----- ----- <u>청구하지</u> ----- ----- <u>임시조치</u> ----- ----- -----.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

③ -----법원-----

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② · ③ (생략)

-----.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가정구성원
이나 그 주거-----

3. (현행과 같음)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
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
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
레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
호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
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
관의 장에게 통치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

<신 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3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
치기간은 2개월

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3호의2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
경찰서의 장, 검사, 피해아동등,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
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생략)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신설>

① (생략)

<신설>

른다.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② 상습적으로 <u>제1항</u>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4.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4의2. ~ 6. (생략) ② (생략)	<u>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u>제2항</u>----- ----- -----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